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4731 취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1. 피고가,

가. 2017. 5. 8. 원고의 B은행 계좌(C)에 대하여 한 예금채권 압류처분,

나. 2017. 10. 23. 원고의 D조합(서울) 계좌(E)에 대하여 한 예금채권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사업자등록

1) 원고는 2009. 3. 10.경 F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redacted]시 [redacted]구 G 지상 집합건물인 H건물 I호, J호,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호실로만 지칭한다)를 39억 원에 매수하고, 2009.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남편의 찜질방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 4. 20.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 6. 30. 2종 목욕장업 면허를 양수하였다.

나. 각 지방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09. 6. 16.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9억 원, 취득일을 2009. 6. 11.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였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등록세는 납부하였으나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하 '[redacted]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에게, ① 2009. 8. 10. 납기일을 2009. 8. 31.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78,655,200원(가산세 포함)과 이에 부수하는 농어촌특별세 7,865,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이하 위 각 본세 및 가산세를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 ② 2009. 12. 10. 사업소세(시·군세) 재산할[1] 1,602,490원(납기일 2009. 12. 31.)을 부과·고지하였다.[2]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시·군세의 목적세 중 하나로 사업소세 재산할 및 종업원할 규정(제6조 제4항 제2호 나목, 제243조 내지 제251조)을 두고 있었으나, 2010. 1. 1. 개정 당시 사업소세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의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 재산분(제176조의3 내지 제176조의7)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제176조의8 내지 제179조의10)로 신설 규정하여 보통세로 전환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구법에 따라 사업소세(재산할)가 부과되었다.

2) 이는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의하여 [redacted]구청장이 경기도지사 및 [redacted], [redacted]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도세인 취득세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시·군세인 사업소세를 각 부과·고지한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2) 또한 [redacted]구청장은 원고에게, ① 2010년도 재산세(시·군세)[3] 토지 분(납기일 2010. 6. 30.)[4]과 각 건축물 분(납기일 2010. 6. 30.)[5], ② 2011년도 재산세(시·군세) 토지 분(납기일 2011. 9. 30.)[6]과 각 건축물 분(납기일 2011. 7. 31.), ③ 면허세[7](도세, 납기일 2010. 1. 31.)를 [별지1] 목록 기재 각 세목별 '체납본세', '부과가산금', '중가산금'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다[8](이하에서는 위 목록 기재 각 세목을 통틀어 '이 사건 지방세'라 한다).

다. 각 지방세 징수처분

1) 2009. 10. 15.자 부동산압류처분 및 해제

가) [redacted]구청장은 2009. 10. 1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체납액 합계 90,154,570원(= 본세 86,520,720원 + 가산금 3,633,85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압류'라 한다), 2009. 10. 16. 그 압류 등기를 마쳤으며, 2009.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 통지를 하면서 위 체납액의 납기를 2009. 10. 30.으로 연장 고지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redacted]구청장의 압류등기에 선행하여 ① 채권자 M

3) 재산세의 납기는 토지분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인 것이 원칙이나(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2010년 각 재산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시부과·고지가 이루어졌다(같은 조 제2항 참조).

4) 2010. 6.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각주 5)에서도 같다)에 따라 2010년 재산세 토지 분에 부수하는 도시계획세(시·군세)와 지방교육세(도세)도 함께 부과·고지되었는데,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를 통틀어 '2010년 재산세(토지)'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별지1] 기재 '체납본세'란 금액은 위 각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각주 4)와 같이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방세법에 따라 2010년 재산세 각 건축물 분에 부수하는 각 도시계획세(시·군세), 공동시설세(도세), 지방교육세(도세)도 함께 부과·고지되었는데, 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각 본세를 통틀어 '2010년 재산세(건축물)'라 하고, [별지1] 기재 각 '체납본세'란의 금액은 위 각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2010. 3. 31. 전면 개정된 구 지방세법 및 같은 날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이 2011. 1. 1.부터 각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재산세에 부수하여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시·군세) 규정이 삭제되고, 공동시설세(도세)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 '2011년 재산세(토지)'라 함은 이에 부수하는 지방교육세(도세)를, '2011년 재산세(건축물)'는 이에 부수하는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각 도세)를 각 포함하는 것이고, [별지1] 기재 세목별 각 '체납본세'란의 금액은 위 각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한다.

7) 2010. 3. 31.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합쳐졌는데, 그 시행일(2011. 1. 1.) 이전에 부과된 이 사건의 경우 면허세는 등록세와 별개의 세목에 해당된다.

8) 이 또한 [redacted]구청장이 각 세목의 귀속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한 것이며, 이하 징수처분에서도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이 받은 2010. 4. 6.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N,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② 2010. 5. 11. 채권자 O이 받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P)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2010. 6. 15.로 정해짐에 따라, [redacted]구청장은 2010. 6.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아래 연번 6 내지 9 부분) 4건 합계 21,672,200원을 납기 전 징수 절차에 따라 수시 부과하고, 2010. 6. 10.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각 재산세를 포함하여 원고가 체납한 지방세 총 9건 합계 121,877,99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는데(이하 '1차 교부청구'라 한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번	과세년도	법정기일	세목	세액	가산세	가산금	합계	비고
1	2009	2009.6.16.	취득세(부동산)	85,800,000	0	11,939,770	97,739,770	
			과세대상	G건물 Q동 I호, J호, K호(매매:근생)				
2	2009	2009.6.10.	취득세(부동산)	0	720,720	0	720,720	
			과세대상	G건물 Q동 I호, J호, K호(매매:근생)				
3	2009	2009.12.10.	사업소세(재산할)	1,292,750	0	105,730	1,398,480	
			과세대상	2009년 재산할(L)				
4	2010	2009.12.10.	사업소세(재산할)	0	309,740	0	309,740	
			과세대상	2009년 재산할(L)				
5	2010	2010.1.10	면허세(일반)	36,000	0	1,080	37,080	
			과세대상	L				
6	2010	2010.6.7.	재산세(토지)	7,157,460	0	0	7,157,460	당해세
			과세대상	G건물 Q동 I호 외 2건 (면적 839.4㎡)				
7	2010	2010.6.7.	재산세(건축물)	859,770	0	0	859,770	당해세
			과세대상	G건물 Q동 J호				
8	2010	2010.6.7.	재산세(건축물)	4,269,010	0	0	4,269,010	당해세
			과세대상	G건물 Q동 I호				
9	2010	2010.6.7.	재산세(건축물)	9,385,960	0	0	9,385,960	당해세
			과세대상	G건물 Q동 K호				
				108,800,950	1,030,460	12,046,580	121,877,990	21,672,200

[표 1] 2010. 6. 10.자 1차 교부청구(갑 제7호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라) 한편, [redacted]구청장은 2010. 10.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를 발송하여,[9] 그 무렵까지 체납된 지방세 총 7건 합계 127,015,020원에 대하여 그 납기를 2010. 11. 1.로 연장 고지하였다.

연번	과세년도	월	세목	과세대상	체납액(원)
1	2010년	6월	재산세(건축물)	G건물 Q동 I호	4,448,260
2	2010년	6월	재산세(건축물)	G건물 Q동 K호	9,780,110
3	2010년	6월	재산세(건축물)	G건물 Q동 J호	892,960
4	2010년	6월	재산세(토지)	G건물 Q동 I호 외 2건 (면적 839.4㎡)	7,458,060
5	2010년	1월	면허세(일반)	L	37,080
6	2009년	12월	사업소세(재산할)	2009년 재산할(L)	1,785,100
7	2009년	8월	취득세(부동산)	G건물 Q동 I호, J호, K호(매매:근생)	102,613,450
총 체납건수 7건				총 체납액	127,015,020

[표 2] 2010. 10. 11.자 체납액 납부안내(갑 제6호증)

마) [redacted]구청장은 2011. 9. 1.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증가된 가산금과 아래 [표 3] 순번 7-1, 8-1, 9-1의 각 기재와 같이 추가 과세한 2011년 각 재산세 및 가산금을 더하여, 원고가 체납한 이 사건 지방세 총 12건 합계 157,821,83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이하 '2차 교부청구'라 하고 위 1, 2차 교부청구를 통틀어 '이 사건 교부청구'라 한다).

연번	과세년도	법정기일	세목	세액	가산세	가산금	합계	비고
1	2009	2009.6.16.	취득세(부동산)	85,800,000	0	27,513,370	113,313,370	
			과세대상	G건물 Q동 I호, J호, K호(매매:근생)				
2	2009	2009.6.10.	취득세(부동산)	0	720,720	0	720,720	
			과세대상	G건물 Q동 I호, J호, K호(매매:근생)				
3	2009	2009.12.10.	사업소세(재산할)	1,292,750	0	394,030	1,686,780	

9) 위 안내서의 발송은 [redacted]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관할하는 [redacted]시 [redacted]구 R동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갑 제6호증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연번	과세년도	법정기일	세목	세액	가산세	가산금	합계	비고
			과세대상	2009년 재산할(L)				
4	2010	2009.12.10.	사업소세(재산할)	0	309,740	0	309,740	
			과세대상	2009년 재산할(L)				
5	2010	2010.1.10	면허세(일반)	36,000	0	1,080	37,080	
			과세대상	L				
6	2010	2010.6.7.	구)재산세(토지)	7,157,460	0	1,245,280	8,402,740	당해세
			과세대상	G건물 Q동 I호 외 2건 (면적 839.4㎡)				
7	2010	2010.6.7.	구)재산세(건축물)	859,770	0	114,810	974,580	당해세
			과세대상	G건물 Q동 J호				
8	2010	2010.6.7.	구)재산세(건축물)	4,269,010	0	742,450	5,011,460	당해세
			과세대상	G건물 Q동 I호				
9	2010	2010.6.7.	구)재산세(건축물)	9,385,960	0	1,632,750	11,018,710	당해세
			과세대상	G건물 Q동 K호				
8-1	2011	2011.7.10.	재산세(건축물)	4,614,270	0	193,760	4,808,030	
			과세대상	G건물 Q동 I호 [1521.13㎡]				
7-1	2011	2011.7.10.	재산세(건축물)	929,300	0	38,200	967,500	
			과세대상	G건물 Q동 J호 [306.36㎡]				
9-1	2011	2011.7.10.	재산세(건축물)	10,145,060	0	426,060	10,571,120	
			과세대상	G건물 Q동 K호 [3344.39㎡]				
				124,489,580	1,030,460	32,301,790	157,821,830	25,407,490

[표 3] 2011. 9. 1.자 2차 교부청구(갑 제8호증)

바) 그 후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2011. 9. 19. S조합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각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교부청구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당해세(= 2010년 각 재산세) 합계 21,672,200원(100%), ② 이 사건 취득세 중 본세액 85,800,000원(100%)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됨에 따라, [redacted]구청장은 위 배당금을 수령하여 2011. 9. 20. [별지1] 목록 '수납합계(G)'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체납액 중 합계 107,475,143원에 각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압류는 2011. 9. 20. 해제되었다.

2) 2010. 1. 5.자 대여금고 압류처분 및 해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가) [redacted]구청장은 2010. 1. 5.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 합계 93,269,29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T은행 U지점(이하 'T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임차한 대여금고(금고번호 V, 이하 '이 사건 대여금고'라 한다)를 봉인하는 방법으로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고 압류처분'이라 한다), 2010. 1.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여금고 및 동산인도청구권 압류통보'를 하면서 '2010. 1. 29.까지 아래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다.

[표 4] 이 사건 대여금고 등 압류 내역

체납액(원)	금융기관 명	금고번호	압류내역
93,269,290	T은행	V	○ 체납자가 본기관(은행 등)에 가지는 동산 인도청구권 ○ 대여금고 동산압류

나) 피고는 2012. 5. 2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방세채권 중 체납건수 총 11건의 잔여 체납액 합계 60,414,1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고를 개봉한 결과 그 안에 내용물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12. 6. 11. T은행에게 이 사건 대여금고에 대한 압류해제 통지를 하였다.

3) 피고의 각 예금채권 압류처분

가) 2017. 5. 8.자 예금채권 압류처분 및 추심

(1) 피고는 2017. 5. 8. 아래와 같은 총 4건의 잔여 지방세 체납액 합계 59,636,850원(= 본세 32,495,820원 + 가산금 27,141,0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B은행(이하 'B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을 위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하고(이하 '제1 채권압류'라 한다), 그 무렵 B은행에 채권압류 통지 및 추심의뢰(추심지급기일 2017. 5. 24.)를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과세 년도	월	세목/과목	법정기일 (징수결정일)	납부기한	지방세(본세)	가산금	계
2011	9	재산세(토지)	2011. 9. 7.	2011. 9. 30.	22,991,810	5,811,700	28,803,510
2009	8	구)취득세(부동산)	2009. 8. 10.	2009. 8. 31.	7,865,520	20,838,120	28,703,640
2009	12	사업소세(재산할)	2009. 12. 10.	2009. 12. 31.	1,602,490	490,130	2,092,620
2010	1	면허세(일반)	2010. 1. 8.	2010. 1. 31.	36,000	1,080	37,080
총 체납건수 11건					32,495,820	27,141,030	59,636,850

[표 5] 2017. 5. 8.자 예금채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2) 이에 따라 B은행은 피고에게 원고의 B은행 계좌(C)에서 예금 잔액 중 2017. 5. 17. 16,440,443원, 2017. 7. 26. 1,653,538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추심액 합계 18,093,981원을 [별지1] 목록 '수납합계(G)'란 중 각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체납세액의 충당 이후 원고의 잔여 체납액을 총 체납건수 11건 체납세액 합계 45,105,33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2017. 10. 11.자 체납액 납부 촉구안내서를 발송하였는바, 위 잔여 체납세액의 세부내역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나) 2017. 10. 23.자 예금채권 압류처분

피고는 2017. 10. 23. 원고의 취득세(납기일 2009. 8. 31.) 등 잔여체납액 합계 60,261,520원(= 본세 20,697,230원 + 가산금 39,564,2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D조합(서울)(이하 'D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을 위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하고(이하 '제2채권압류'라 하고, 제1, 2채권압류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그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1)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부동산압류는 2011. 9. 20. 해제되어 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무렵 충당되지 않고 남은 원고의 체납액에 대한 피고의 지방세징수권은 위 압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9. 20.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은 시효로 소멸된 지방세징수권에 근거하여 위법하다.

한편 2010. 1. 5.자 이 사건 대여금고 압류처분은 그 압류목적물이 '대여금고 내의 유체동산 또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고에 대한 봉인조치는 그 안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동산 등을 압류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임차한 T은행 소유의 대여금고 자체에 대한 압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대여금고 내에 압류 대상인 동산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 해당하며, 달리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redacted]구청장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관한 연기신청을 하지 않는 등 지방세징수에 관한 업무태만 및 불성실로 인하여 원고의 잔여체납액이 남게 된 것이고, 원고로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여 납세자인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위법하다.

3) 제1채권압류 통지의 송달 무효

원고는 B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제1채권압류 통지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추심 및 체납액 충당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우연히 위 압류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바, 제1채권압류는 체납자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여 위법한 징수처분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2010. 1. 5.자 이 사건 대여금고 압류처분에 따라 그 무렵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후 2012. 5. 21. 이 사건 대여금고를 개봉한 결과 그 안에 내용물이 없었더라도 위와 같은 집행의 착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를 해제한 2012. 6. 12.부터 다시 기산되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7. 5. 8. 이루어진 제1채권압류는 적법하다.

2)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의 권리행사는 피고의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신의칙 위반 등 위법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5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인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은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중단사유를 규정하면서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제1호), '독촉 또는 납입최고'(제2호), '교부청구'(제3호), '압류'(제4호)를 들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하면서,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제1호),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제2호), '교부청구중의 기간'(제3호),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이는 동일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징수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82조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865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당연 무효인 압류, 독촉 등에 의하여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부동산압류처분 및 피고의 교부청구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가 위 압류처분이 해제된 2011. 9. 20.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이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9. 2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20.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에 앞서 2010. 1. 5. 자 대여금고 및 동산인도청구권 압류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고, 중단된 시효는 위 압류가 해제된 2012. 6. 11.경부터 다시 새로이 진행한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고 압류는 그 대상이 부존재하여 무효인 압류처분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더불어, 갑 제22호증, 을 제1, 7,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고 압류는 그 대여금고 자체가 아니라 대여금고 내 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로서 그 목적물의 부존재로 인하여 압류의 효력이 즉시 실효되었을 뿐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다만 그 압류 통지는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 제2호 소정의 '독촉 또는 납부최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고를 봉인하여 압류한 조치를 '대여금고'라는 동산 자체를 압류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인 T은행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로서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당연 무효의 압류처분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이 사건 대여금고 압류 통지에 의하면 '대여금고 및 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고에 대한 봉인조치는 대여금고 내에 보관 중인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그 인도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압류처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대여금고의 압류 통지 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T은행에 대한 동산 인도청구권을 압류하였다는 취지 또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와 제3채무자인 T은행에게 통지한 것은 위와 같은 인도청구권 압류의 집행방법으로서 적법하고, 이 사건 대여금고에 대한 봉인조치는 채권압류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채무자(납세의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조치로도 볼 수 있다.

③ 한편, 처음부터 대여금고 내에 보관물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피압류채권인 동산인도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존재하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세무공무원이 이와 같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한 것 자체로 발생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즉시 실효되어 그 다음날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해당 압류가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처럼 당초부터 효력이 없었던 압류처분에 대하여 뒤늦게 압류해제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까지 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2항 제4호에 따라 위 압류 해제통지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피고가 그 즉시 이 사건 대여금고를 개봉하지 아니하여 2012. 5. 21.경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고의 압류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하는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 제4호 소정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한편 [redacted]구청장이 이 사건 대여금고의 압류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2010. 1. 29.까지로 연장하여 고지한 것은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독촉 또는 납입최고'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연장된 납부기한까지는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다만, 이 사건 부동산압류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으로 위 압류가 해제된 2011. 9. 21.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나아가 을 제3호증의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1. 9. 21. 이후 위 소멸시효의 완성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지방세징수권은 2011. 9. 21.부터 5년이 경과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2016. 9. 20.경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소멸로 아무런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징수처분 및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당연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지방세징수권이 2016. 9. 20.경 시효로 소멸한 이후 2017. 5. 8. 및 2017. 10. 23. 당시 납부의무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징수처분으로서 위법할 뿐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장차 이루어질 피고의 예금채권 추심 등 추가적인 징수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이와 같이 피고의 지방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되, 처분의 경위 및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1]

목록(잔여체납액 45,105,330원의 세부내역)

2018.9.27.조정

세목	과세년도	과세대상	체납본세 (A)	부과가산금 (B) = A x 3%	중가산금 (C = A x 1.2% x D)	중가산금 회차 (D)	중가산금 발생일	가산금 합계 (E=B+C)	총체납액 (F=A+B)	수납합계 (G)	수납일	잔액 (H=F-G)	조정일	조정액
총합계			132,823,220	3,984,560				50,114,420	182,937,640	125,601,900		57,335,740		45,105,33
취득세 본세	2009-08-10		78,655,200	2,359,650	22,652,640	24회	2009.10.01 ~2011.9.1	25,012,290	103,667,490	85,802,350	2011-09-20 (정매배당)	17,865,140	2012-02-27	12,230,41 (기 조정되어 차감한세액
취득세 농특세			7,865,520	235,960	2,737,020	29회	2009.10.01 ~2012.2.1	2,972,980	10,838,500	-		10,838,500	2018-09-27	16,473,23
합계			86,520,720	2,595,610	25,389,660			27,985,270	114,505,990	85,802,350		28,703,640	2012-02-27 (기 조정한 세액)	28,703,64
재산세 (토지)	2010-06-01		7,157,460	214,720	1,030,560	12회	2010.10.01 ~2011.9.1	1,245,280	8,402,740	7,158,050	2011-09-20 (정매배당)	1,244,690	2018-09-27	1,244,69
재산세 (건축물)	2010-06-07		9,385,960	281,550	1,351,200	12회	2010.10.01 ~2011.9.1	1,632,750	11,018,710	9,385,960	2011-09-20 (정매배당)	1,632,750	2018-09-27	1,632,75
재산세 (건축물)	2010-06-07		859,770	25,770	89,040	12회	2010.10.01 ~2011.9.1	114,810	974,580	859,770	2011-09-20 (정매배당)	114,810	2018-09-27	114,81
재산세 (건축물)	2010-06-07		4,269,010	128,050	614,400	12회	2010.10.01 ~2011.9.1	742,450	5,011,460	4,269,010	2011-09-20 (정매배당)	742,450	2018-09-27	742,45
재산세 (토지)	2011-09-07		7,303,180	219,090	5,257,800	60회	2011.11.01 ~2017.5.17	5,476,890	12,780,070	-		12,780,070	2018-09-27	12,780,07
재산세 (건축물)	2011-07-08		10,145,060	304,340	7,303,200	60회	2011.11.01 ~2017.5.17	7,607,540	17,752,600	16,473,230	2017-05-18 [redacted]은행수납	1,279,370	2018-09-27	1,279,37
재산세 (건축물)	2011-07-08		929,300	27,870	619,800	60회	2011.11.01 ~2017.5.17	647,670	1,576,970	-		1,576,970	2018-09-27	1,576,97
재산세 (건축물)	2011-07-08		4,614,270	138,410	3,321,000	60회	2011.11.01 ~2017.5.17	3,459,410	8,073,680	1,653,530	2017-07-27 [redacted]은행수납	6,420,150	2018-09-27	6,420,150
면허세	2010-01-08		36,000	1,080	-	-		1,080	37,080	-		37,080	2018-09-27	37,080
사업소세	2009-12-10		1,602,490	48,070	1,153,200	60회	2010.11.01 ~2017.5.17	1,201,270	2,803,760	-		2,803,760	2018-09-27	2,803,7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② 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다. 면허세
2. 목적세
 가. 공동시설세
 나. 지역개발세
 다. 지방교육세

④ 사군세(廣域市의 郡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나. 재산세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나. 사업소세

■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고 2011. 11. 1.부터 시행된 것)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민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28조 (체납처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納付 또는 納入의 催告를 包含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30조의5(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2

제30조의6(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0조의5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납입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끝.